

	<b>보도 참고 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 금융</li> <li>· 따뜻한 금융</li> <li>· 튼튼한 금융</li> </ul>
	<b>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b>	

작성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손주형 과장(2156-9730)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2156-9732) 태현수 사무관(2156-9733)
배포일	'15. 9. 30(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6매

### 제 목 : 2015년 WEF 금융부문 평가 관련

#### 1 WEF 평가결과,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 하락('14년 80위 → '15년 87위)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W E F	국가경쟁력	19위	22위	24위	19위	25위	26위	26위 (-)
	금융시장 성숙도	58위	83위	80위	71위	81위	80위	87위 (Δ7)
I M D	국가경쟁력	23위	22위	22위	22위	22위	26위	25위 (+1)
	금융부문	33위	30위	28위	25위	28위	29위	31위 (Δ2)

○ 항목별로는 총 8개 세부항목중 7개(87.5%)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법적 권리지수\*'가 하락(Δ34 단계)

※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 점수를 그대로 반영(별첨참고)하여, '14년 하반기와 금년중 진행되었던 금융개혁 추진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음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5	'14		'15	'14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	99 (+1)	100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86 (+21)	107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	89 (+1)	90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113 (+9)	122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47 (+18)	65	증권거래관련 규제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78 (+11)	89
대출의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119 (+1)	120	법적 권리 지수 (legal rights index)	63 (Δ34)	29

2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되어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높고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

#### ※ (참고) 2015년 WEF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

✓ 뉴질랜드 1위, 영국 16위, 콜롬비아 25위, 과테말라 27위, 르완다 28위, 프랑스 29위, 네덜란드 31위, 케냐 42위, 오스트리아 47위, 나미비아 50위, 스리랑카 51위, 아일랜드 61위, 스페인 77위, 한국 87위, 이탈리아 117위

#### 1 총점 중 설문조사(만족도) 비중이 87.5%

\* 세부지표 8개중 7개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  
\* 설문내용도 포괄적 : 금융서비스 가격은 적정인가? 매우 부적정(1점), 매우적정(7점)

#### 2 설문대상이 기업 경영인에 편중

\* 설문대상범위 : (IMD)기업CEO·간부·금융인·주한 외국계기업 (WEF)기업CEO

3 세부 항목별로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WEF 평가 결과에 비해 양호한 수준

#### [ 韓 금융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 ]

#### 1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 세계은행(WB, Financial Inclusion 2015) 143개국 대상의 금융이용가능도(Financial Inclusion)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

\* 15세이상 인구중 계좌보유비율 : (한국)94.4%, (세계)60.7% (OECD)94.0%  
\* 무인화기기(ATM) 이용한 출금비율 : (한국)77.0%, (세계)48.3% (OECD)68.5%  
\* 15세이상 인구중 체크카드(debit card) 이용비율 : (한국)56.1%, (세계)40.1%, (OECD)65.3%  
\* 15세이상 인구중 신용카드 이용비율 : (한국)53.9%, (세계)15.1%, (OECD)46.7%  
\* 인터넷 지불·결제 이용비율 : (한국)52.5%, (세계)16.6%, (OECD)54.1%

#### 2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 미국 등 글로벌 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계좌관리수수료(월): 韓 면제, 美(씨티) 1만~3만원, 英(Barclays) 12천원  
\* 타행송금수수료(창구): 韓 0~3천원, 美(씨티) 3만5천원, 英(Barclays) 4만5천원

### ③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 ⇒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1.2조달러로 세계 15위 수준**(14년말 기준)
- ⇒ 우리 주식시장 **상장기업 수는 1,864개로 세계 9위 수준**(14년말 기준)
- ⇒ 전체 기업의 IPO 및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40% 증가, 특히 중소기업 자금조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
- \* 전체 상장기업 IPO, 유상증자(억원) : ('13)52,020 ('14)57,662 (**'14.1~8)32,084 ('15.1~8) 44,663**)
- \* 상장 중소기업 IPO, 유상증자(억원) : ('13)7,970 ('14)15,628 (**'14.1~8)3,953 ('15.1~8)9,219**)

### ④ 대출의 용이성

- ⇒ 세계은행(World Bank, 2015)에서 발표한 기업의 대출접근성 지표도 **OECD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
- \* 과거 1년간 기업경영 등 목적의 대출경험 : (한국)4.6%, (OECD)2.6%
- ⇒ 기업대출도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12년중	'13년중	'14년중	'15년							'15.7월말 잔액 <sup>o</sup>
				7월중	1-7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7월중	
기업대출	32.5	36.2	51.5	2.8	32.4	1.6	6.4	3.7	2.2	5.2	738.2
대기업	27.6	8.9	16.1	△0.2	△3.9	△4.2	0.4	△2.2	△2.2	0.1	179.5
중소기업	4.9	27.3	35.4	2.9	36.3	5.8	6.0	5.8	4.3	5.1	558.7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신탁대출금 기준

- ⇒ 특히,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도 증가**
- \* '14.7.1일~'15.7.말 기준, 44.2조원(68,581건)의 자금을 우수기술 기업에 공급  
(일반 중기대출 대비 건당 대출규모가 평균 4.5억원 높고, 대출금리도 0.39%p 낮음)

### ⑤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비중도 양호한 수준**

<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추이 (국내 : 신기술업권 포함)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한국 (억원)	창 투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신기술	4,962	3,169	4,518	6,146	5,857	9,156	7,796
	소 계	12,209	11,840	15,428	18,754	18,190	23,001	24,189
미국(백만달러)	30,392	20,357	23,438	29,883	27,582	30,061	49,310	
유럽(백만유로)	6,308	3,822	3,661	3,695	3,206	3,410	3,613	

※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비중(14년 기준, OECD)

: (한국)0.06%, (미국)0.28%, (일본)0.04%, (영국)0.04%, (독일)0.02%, (뉴질랜드)0.02%

-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온라인 소액투자 기반 조성** 작업도 추진중 ('16.1.25일 관련제도 시행)

### ⑥ 은행건전성

- ⇒ 국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국제적으로도 양호한 수준**

\* 15.6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

\* 은행 BIS 비율(15.6월말, %) : (한국)14.09 (미국)13.98 (일본)15.63(15.3월말)

- ⇒ **부실채권비율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양호**

\* 은행 부실채권비율(15.6월말) : (한국) 1.50%, (미국) 1.68%, (일본) 1.64%(15.3월말)

### ⑦ 증권거래관련 규제

- ⇒ '15.9.25일 현재 잔액기준으로 총 508.2조원(주식 406.6조원, 채권 101.6조원)의 **외인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자본시장 규제가 **과도하게 낙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

※ '09.1.1일부터 '15.9.25일까지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주식순매수 비중(%)

: (한국)5.51 (인니)3.23 (대만)5.71 (태국)△1.15 (필리핀)2.82 (베트남)2.58 (일본)5.73

**⑧ 기타 금융 경쟁력 지표 비교**

⇒ (금융중심지) 9.24일 英 컨설팅그룹 Z/Yen이 발표한 세계금융센터 지수(GFCI) 조사에서 84개 도시중 서울은 6위, 부산은 24위를 기록

⇒ (시스템리스크)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거시건전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IMF는 '15.5월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견고한 완충자본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4]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원활히하고 금융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

- 특히, 금융시장·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의 금융이용에 따른 애로 및 불편을 해소하여
-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해나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책수립,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

**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연내 중점 추진**

\* 그림자금융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 금융업권별 발전방안, ISA,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② 법률·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

\* 既 상정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상정 예정 법안: 전자증권법(전자증권도입, 10월),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12월), 금융지주회사법 등 9개 법안(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16년) 등

**③ 금융회사 스스로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별첨**

**2014년(작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 '14.10.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적권리지수' 평가가 악화 (13년 8점/10점만점 → 14년 5점/12점만점)

※ 법적권리지수란 담보·도산에 관한 법률이 채권·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대출을 촉진하는 정도

< 법적권리지수 세부 평가기준 >

평가기준	평가	점수
담보권 설정, 등록, 집행 등 담보부 거래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No	-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어느 한 종류의 채권연장 담보동산(외상매출계정 내지 재고물품)에 대해 비점유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No	-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모든 자산에 대해 비점유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No	-
담보권의 효력이 장래 취득한 자산에까지 확장가능하며, 담보물로 만든 상품, 담보물의 대가 또는 대체물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Yes	1
담보계약시 당사자간에 특정액수 대신 최대치를 기술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채무와 부채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Yes	1
담보등록시 위치와 자산유형별뿐 아니라 담보제공자별로 등기가 되는지	Yes	1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 담보등록 제도가 존재하는지	No	-
담보 등록, 수정, 취소, 검색이 가능한 현대적인 온라인 담보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Yes	1
도산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절대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No	-
파산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절대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No	-
회생절차에서의 자동중지 또는 지급유예에도 불구하고 담보채권자의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No	-
법원 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인정되는지? 담보 채권자가 경매 및 지명 입찰을 통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지?	Yes	1
합 계		5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